

# 2021년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71건(안전번호 제2021-68940호~7000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68940호~68941호(순번 1번~2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 파일만 제공한 사안으로, 동 자막 파일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68942호~68969호(순번 3~3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69137호~69141호(순번 198번~202번)는 게시자 또는 게시자가 속한 단체의 회원이 출연한 영상저작물을 블로그 또는 카페를 통하여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정권고 제도의 본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68970호~69136호(순번 31번~197번), 안전번호 69142호~70000호(순번 203번~1061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계

시물 1,73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B 위원: 회의록 일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수정함.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

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7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061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7화~8화, ‘□□□□□’ 1화~5화의 우리말 자막 파일(smi)을 영상물 없이 게시한 사안임. 총 4개의 게시물임.

‘△△△△△’는 일본 ◇◇◇◇◇에서 ◎◎◎◎◎부터 현재 방영 중이며, 우리나라 ◇◇◇◇◇에서 ◁◁◁◁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한회당 770원에 대여, 1,500원에 구매 가능함. 국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 경우 모두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 중인 사실이 확인됨.

‘▷▷▷▷▷’는 ♠♠♠♠에서 ♥♥♥♥♥부터 현재 방영 중임.

심의대상 게시글 및 ☼☼☼☼☼에서 다수의 광고가 확인됨.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의 7화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며, 다수의 광고 배너가 게시되어 있음. (smi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보여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 대사가 구간별로 싱크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의 1화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며, 순번 1번과 유사한 구조임. 광고 배너가 다수 게시되어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일본 애니메이션 대본(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사안의 경우 게시자가 자막 파일을 직접 작

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송 중인 사실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2차적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산권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동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판단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①자막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제공행위 자체를 영리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다수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물 이용에 따른 광고수익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복제·전송 중인 점(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인정됨.

또한 ③국내 합법 시장에서 동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말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바,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외국어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우리말 자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영상만으로는 적절한 감상을 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합법적인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는 합법 시장으로의 유인책이 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의 고려요소 중 적극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서 ①심의 대상 자막 파일은 smi 파일로 제공 중인 바, 특정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여 음성과 자막을 싱크하므로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심의대상 게시물을 비롯하여 블로그의 다수 게시물에서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배너가 확인되는 점, ③해당 블로그는 2021. 6. 18. 현재 심의대상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막 파일을 제공 중인 점이 인정됨.

소극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서 ①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게시자의 2차적저작물작성자로써의 창작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②애니메이션 중 순번 1번의 해당 회차는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유통되고 있으며, ③각 애니메이션은 2021. 4.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작품으로, 저작권자가 권리행사 없이 장기간 방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신 저작물로서 시급하게 보호하여야 할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됨.

심의대상 자막 파일의 이용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 판단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의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는 자막 파일의 경우에 한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이런 요소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동안 거치면서 기준 또는 지침으로 적용된 것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사안별 침해 판단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 파일은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사안의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립한 심의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번~30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과 출판물 ‘■ ■ ■ ■ ■’, ‘★★★★★’,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28개 게시물이임. (순번 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완결본과 외전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2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완결본과 외전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3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30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8번~20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5건). 모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 ■■ 블로그 또는 카페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순번 198번~200번은 ■■■■ 블로그에 '◀◀◀◀◀'의 전체 또는 일부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및 블로그 소개글 등으로 미루어보아 게시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순번 201번과 순번 202번은 각 카페 운영자가 게시한 게시물로 방송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시 단체(‘○○○○○○’ 및 ‘○○○○○○’)의 회원이 직접 출연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 및 전송하고 있음. 다만,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방송 출연 계약 당시 자신의 출연분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일 이용허락을 얻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음.

만약 이용허락이 없는 사안이라 하여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①양적으로는 해당 방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본인(또는 단체 회원)이 출연한 부분에 한정하고 있으며, ②자신의 방송 출연 경험을 공유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이러한 이용이 합법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더불어,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

종합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관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98번~20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98번의 경우 게시자가 출연한 전체 분량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게시자가 해당 방송에 1시간이나 출연을 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방송에 게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패널로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단독으로 1시간 내내 방송한 것은 아님. 다만, 동 게시자가 해당 방송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중간중간 방송에 참여하거나 화면에 노출되었으므로 1시간 전체 분량에 출연했

다고 본 것임.

- A, C 위원: 동 건과 같이 카페·블로그 게시자 본인 출연 방송물의 경우 보호원 모니터링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공정이용으로 불여지가 있는 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정권고 제도의 본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8번~202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1번~197번, 203번~10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내가 설렐 수 있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78번은 웹하드에서 음악 '내가 설렐 수 있게'를 1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3분 48초를 제공하고 있음. 가수 '에이핑크'의 'Dear' 앨범

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2016. 12. 15. 발매함. 멜론 등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게임 '매스 이펙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41번은 웹하드에서 게임 '매스 이펙트'를 9,840포인트에 제공 중임. Electronic Arts Inc.가 저작권을 보유함. 2007년 11. 20. 발매되었으며, STEAM에서 22,000원에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1번~197번, 203번~106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31번~197번, 203번~1061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1번~197번, 203번~106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69137호~69141호(순번 198번~202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68940호~69136호(순번 1번~197번), 안전번호 69142호~70000호(순번 203번~106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